

□ 개정내용

- ① (HUG) '28년말까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 면제(~'30년말)
- ② (사업주체) HUG가 매입한 주택을 환매 기간내 사업주체가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~'30년말)

□ 적용요령

- 공포한 날부터 시행(부칙 §1)
- 시행일(공포일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)

②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제34조(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“주택도시보증공사”라 한다)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	제34조(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) ① <u>주택도시보증공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